

# 기본 약관

2021 년 10 월 02 일

코리아오브컴 주식회사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코리아오브컴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00 논현빌딩 6층, 02-3444-7311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위성통신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 가입자(계약자를 포함합니다)간에 서비스의 주요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②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 및 기타 서비스 이용조건은 변경된 약관에 따릅니다.

③회사는 이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공시합니다.

④또한, 회사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가입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관련법령과 개별 서비스계약서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주장비, 부대장치,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2. 전기통신회선설비 :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
3. 전기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통신을 중계하거나 통신을 제공하는 것
4. 위성통신단말기(단말기): 위성통신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위성통신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용하는 송수신장치
5. 관문지구국 : 통신위성의 중계로 휴대이동지구국과 통신이 되도록 지상에 설치한 위성관문지구국
6. 망운용센터 : 위성통신단말기 또는 가입자 호스트 단말기로부터의 메시지처리 및 관문지구국에 대한 제어를 행하는 운용 통제센터
7. 위성통신시스템 : 위성, 관문지구국, 망운용센터, 위성통신단말기 등으로 구성된 통신시스템

- 8. 위성통신서비스(서비스) : 위성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음성 무선 데이터, 인터넷, 전자 메일, 위치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9. 가입자(계약자) : 회사와 위성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
  - 10. 가입자회선 : 가입자가 위성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망운용센터와 가입자가 지정한 위성통신단말기 사이에 설정한 전기통신회선
  - 11. 상호접속점 : 회사와 회사 이외의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호접속협정에 근거하여 접속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점
  - 12. 상호접속사업자 : 회사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 13. 위성통신서비스계약(서비스계약) :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5조(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통신:** 위성관문지구국과 가입자가 지정한 위성통신단말기 사이에 통신위성의 중계에 의해 전기통신회선을 설정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위성통신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내용	비고
오브컴위성통신서비스	오브컴에서 발사 운영하는 지구저궤도 위성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위성통신서비스	
IsatData Pro 서비스	Inmarsat 위성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위성통신서비스	

## 제 3 장 계약체결

**제6조(가입계약)**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회사 또는 위탁대리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
-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의 사본

- 4.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계약자의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5.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6.단말기 기술기준확인증 또는 그 사본. 단, 기술기준확인 증명이 부착된 단말기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가입승낙)** ①회사는 가입자의 이용계약서 및 신청서류가 회사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②회사는 이용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이용 중에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회사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③회사는 관련 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순서에 따라 계약을 승낙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국가안보 및 치안 기타 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2.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서비스

**제8조(이용계약에 대한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타인 명의의 계약
- 2.허위서류를 첨부한 계약
- 3.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그 계약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계약자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3.전파법령에 저촉될 경우
- 4.사업자들이 공동 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회사는 계약자가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 불량신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의 규정에 위하여 계약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위치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②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전기통신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가입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단 가입자가 그 활용 등에 동의한 개인 신용정보 또는 요금을 체납하는 등 신용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입자의 정보는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기구(고객지원)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⑤회사는 서비스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가입자에게 고지할 사항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의 종류, 효율, 가입자 식별 부호 및 이용자보호기구의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⑥ 회사는 위성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신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신내역의 항목: 일자/시간, 발신/수신 주소,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데이터사용)

2. 통신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청구, 고객센터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⑦ 회사는 제⑥규정에 의한 통신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신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6 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신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 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 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4.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5.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10조(가입자의 의무)** ①가입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가입자는 단말기의 설치장소, 가입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가입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단말기 등을 임의로 철거, 분해하거나 내부회로를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때는 예외로 합니다.

## 제 5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1조(통신의 종류)**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통신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이 있습니다.

1. 일반통신 : 위성통신단말기 상호간의 통신
2. 상호접속통신 : 위성통신단말기와 상호접속점 간의 통신

**제12조(회사의 영업구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회사는 대한민국 전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일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통신서비스 지역 내에서도 실내, 지하주차장, 건물음영지역, 터널, 산악지역 등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3조(단말기 간의 통신)** 오브컴위성통신단말기 간의 통신은 그 단말기가 회사의 영업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제14조(상호접속점 간의통신)** ①상호접속점간의 통신은 상호접속협정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통신에 한합니다.

②상호접속협정에 의거한 상호접속의 일시정지, 해제의 경우와 상호접속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휴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호접속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관련된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개시일은 이용계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때로 합니다.

**제16조(가입자식별부호)** ①표준통신의 가입자 식별부호는 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가입자가 정합니다.

②회사는 업무 취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가입자식별부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통신의 가입자식별부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단말기의 설치 등)** ①가입자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서비스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 등 설비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단말기는 가입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회사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타인사용의 금지)** 가입자는 전기통신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이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단말기 등의 점검)** ①회사는 가입자가 설치한 단말기 등이 서비스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가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단말기 등의 유지보수)** 가입자가 설치한 단말기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보수는 가입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21조(장비의 임대 및 보증)** ①가입자는 약관 및 회사와의 별도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자는 회사가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임대장비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가입자는 회사가 임대한 장비의 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장비의 임대기간은 가입자와의 약정기간에 따르며 계약 만료 3일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⑤가입자는 서비스계약의 해지(해약) 또는 임차장비의 자체 구매 등으로 장비임대차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해약 희망일 3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에게 임대한 장비가 손망실된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이에 대한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장비 임대기간을 약정한 가입자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이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약관 및 회사와의 임대계약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기타 회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⑦서비스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는 임차한 장비를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입자측의 사유로 회사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약관, 서비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변상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2조(과금 대상 통신량 측정)** 과금 대상 통신량은 가입자회선에서 발신, 수신되어 메시지 전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며, 회사의 기기 또는 장비에서 측정된 것으로 합니다. 회선의 고장 등 발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과금 대상 통신량이 통신 상대방에 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금 대상 통신량에서 제외합니다.

## 제 6 장 이용정지

**제23조(불온통신의 금지)** 가입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제24조(불온통신의 제재방법)** 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그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①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6조(서비스제공중단)** ①회사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불온통신의 단속)를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의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기타 전기통신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②가입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서비스제공중단 및 해제절차)** ①회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제공 중단 7일 전까지 해당 가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통지 받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비스제공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시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서비스제공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기간 중에 그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제공중단을 해제합니다.

**제28조(서비스제공휴지)** ①회사는 시설 또는 기술상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제공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제공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 제 7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29조(계약사항 변경 및 제한)** ①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가입자의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3.가입자가 제3자에게 이용권을 승계하는 경우
- 4.휴대용을 제외한 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5.가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 6.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식별부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7.가입자가 요금납부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8.일시 이용 중단 및 재이용의 경우

②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주소변경
- 2.단말기 분실 등록 및 습득 등록

③가입자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가입자가 요금 등을 미납한 경우
- 2.회사와 체결한 서비스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 3.관련설비 및 기술상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0조(이용권의 양도 및 승계 제한)** ① 서비스이용권은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의 승계를 제한합니다.

1.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2. 승계 받고자 하는 자가 전파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승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④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로부터 승계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31조(일시이용중단 및 재이용)** ①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거나, 일시 중단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일시이용중단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3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의 군입대 등으로 장기간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시이용중단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입자가 일시이용중단 해제 등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통보한 후 서비스를 정상상태로 환원하고 이용요금을 정상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말기의 훼손, 분실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일시이용중단 기간동안에는 송수신기능이 정지됩니다. 단, 분실된 단말기를 회수하기 위해 가입자가 선택한 때에 한하여 최장 30일간 수신기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가입자가 일시이용중단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2조(서비스계약의 해지)** ①가입자가 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나 계약을 체결한 위탁대리점에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또는 법인등록부 사본)과 함께, 사용자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해지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해당 구비서류(서명 또는 날인한 해지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입자 신분증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후,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또한, 가입자가 직접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을 경우, 가입자의 대리인이 해지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가입비 등 납입하여야 할 요금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계약임이 확인된 경우

3. 가입자측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제공 중단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자가 전기통신관련법령, 약관 또는 회사와의 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5. 전파법령에 저촉되어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때
  6. 가입자측 사유로 서비스 개시가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 ④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사유 통지 시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8 장 요금 등

**제33조(요금 등의 종류)** ① 위성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 표준통신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신료 : 통신위성 접속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

2. 가입비 : 오브컴위성통신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기본료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산정하며, 통신료는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34조(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요금월로 하여 월정액으로 납입을 청구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요금은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④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제공이 휴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⑤ 요금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 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제35조(서비스제공중단 중의납입의무)** ①가입자는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휴지 중인 경우에도 기본요금의 50%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6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①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합니다.  
②가입자는 회사가 미리 정한 납입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계약의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시 납부케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요금 등의 납입청구)** ①회사는 가입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요금 등을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⑤가입자는 회사에 신고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8조(요금납입의 특례)**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의무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정하는 자인 경우에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체납요금 등의 징수)** ①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 요금 청구 시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③회사는 가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납입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0조(요금 감면 및 할인)** ①회사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가입이 해지된 가입자가 재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해지 후 3개월 이내인 가입자
2. 면제횟수 : 1년 1회 (면제일로부터 재가입시까지 기간 기준)
3. 승계 및 명의변경 제한 : 재가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승계 및 명의변경 불가

**제41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가입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가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42조(요금 등의 반환)** ①회사는 가입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따라 기본료를 시간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②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 오 납 된 요금 등을 반환하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가입자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3조(통신내역의 열람청구)**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통신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신내역은 최근 6 개월분만 제공합니다.

②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내역 요청시에는 소정의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9 장 손해배상

**제44조(손해배상의 범위)** ①회사는 가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와 제28조에 정한 서비스제공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가입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③제2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0 장 위치정보 보호

**제45조(위치정보보호목적)** ①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②회사는 위치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무총괄을 담당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리아오브컴(주) 대표이사 송형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00 논현빌딩 6층, 02-3444-7311

전자우편주소 : [service@orbcomm.co.kr](mailto:service@orbcomm.co.kr)

**제46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의하는 기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⑤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 ; 제공 일시 및 이용 ; 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⑥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 ; 저장 ; 분석 ;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제 47조 (위치정보의 서비스 내용 및 수집방법개요)**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서비스 내용 및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는 고객의 가입자 단말기에서 생성된 위치정보가 포함된 전문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전달하며, 회사는 통신량에 따른 사용료를 과금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E-mail로 위치정보를 문자의 형태로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위치기반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이동체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은 GPS장치로부터 획득한 위치정보를 SSAS(Ship Security Alert System, 선박보안경보장치)등 고객이 선택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가입자 단말기를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전문형태로 생성하여 위성네트워크를 경유하여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전달됩니다.

단, 시스템 자체적으로 가입자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므로 GPS 장비가 없는 가입자 단말기는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제 48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시스템 운영 등의 사유로 개인위치정보를 별도 수집 및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이 자의적으로 발신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전문은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자동 전달됩니다.

② 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는 고객이 지정한 수신처로 전달되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제 3자 외 타인 또는 타기업 및 기관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제 3자에게 개인정보 및 사용내역의 제공 시, 제공받은 자, 취득경로, 이용, 제공일시 및 이용 제공방법 등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매회 즉시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경우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⑤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⑥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 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 49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고객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고객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서류양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50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중지)** ① 고객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서류양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51조 (서비스의 해지후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보존)**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확인 자료를 최소 1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기타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 52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 고객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및 정정 요구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정한 서류양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 53조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와 위치정보수집 단말 장치의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실사용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에 명시한 계약자, 실사용자 외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자인 명의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간주합니다.

③ 법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사용자인 개인 위치정보 주체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개인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제 54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전달시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는 회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거쳐, 고객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위치정보수집 장치, 위치기반사업자에게 전송된 위치정보는 개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영구 삭제되며 개인위치 정보수집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저장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최소 1년간 보유할 수 있으며,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 55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합니다)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 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 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

"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합니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제 56조 (법정대리인)** ①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권 및 동의유보권,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권 및 일시적 중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 57조 (면책 조항)** ①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정확성 또는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사용하는 전자우편주소의 오류나 전자우편서비스 사업자, 고객이 지정한 위치 정보수집장치, 위치기반사업자 및 통신 중개업체의 과실로 인한 서비스 불완전으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의 제43조항을 따릅니다.

**제 58조 (손해배상)** 고객이 회사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내지 제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는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59조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①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lt;별표 1&gt;

위성통신서비스 요금표

## 1. 오브컴위성통신서비스 요금

## 1) 서비스 요금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 기준	요금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표준	18,000	600	3	
선택 1	20,000	1,800	3	
선택 2	22,000	3,000	3	
선택 3	26,000	5,000	3	

\* 데이터 전송기준 : 1 Byte

## 가. 장문추가요금

장문A : 1회 전송량이 500 ~1,000 bytes인 경우 : 1,500원/건당

장문B : 1회 전송량이1,000bytes를 초과할 경우 : 4,500원/건당

## 나. 수수료

- 휴지 수 수 료 : 1,000원/ 건당
- 단축주소 변경 : 1,000원/ 건당

2) 가 입 비 : ₩30,000/단말기 당

\* 상기 요금은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2. IsatData Pro 서비스 요금**

1) 서비스요금

가. 표준데이터 서비스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기준	월간 기본료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0K Individual Plan	10,000	0	4	
10K Individual Plan	23,000	10,000	2	
25K Individual Plan	34,600	25,000	1	
50K Individual Plan	53,500	50,000	1	
100K Individual Plan	86,400	100,000	1	

\* 데이터 전송기준 : 15 Byte (1Byte ~ 15 Byte = 15 Byte)

\*\* 10K Individual Plan : 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에 한함. 최대 사용 기간 25일

나. Pooled 데이터 서비스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기준	월간 기본료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10K Pooled Plan	26,900	10,000	2	
25K Pooled Plan	40,300	25,000	1	
50K Pooled Plan	62,500	50,000	1	
100K Pooled Plan	99,800	100,000	1	

\* 데이터 전송기준 : 15 Byte (1Byte ~ 15 Byte = 15 Byte)

\*\* Pooled 데이터 서비스 : 그룹 내의 장비들의 결합 상품

(10K Pooled Plan 가입자 10 ==> 10K X 10 = 100K 공동 사용)

다.Broadcast 데이터 서비스

(금액단위 : 원, Byte)

요금기준	월간 기본료	월간 무료 Byte	초과 1Byte당 사용료	비고
10K Plan	192,000	10,000	2	
25K Pooled Plan	240,000	25,000	1	
100K Pooled Plan	480,000	100,000	1	

\* 데이터 전송기준 : 15 Byte (1Byte ~ 15 Byte = 15 Byte)

2) 가입비

Gateway Account Activation : 384,000원

Mobile Activation(단말개통비) : 40,000원

Broadcast ID Activation : 40,000 원

3) ID 그룹 이전비 : 38,400원

\* 상기 요금은 부가세 별도 기준입니다.

<별표2>

요금 등의 감면

감 면 대 상	내 용	비 고
회사(당사)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 휴지 시의 해당 이용요금	기본료 감면	해당 기간동안 일할계산

<별표 3> 구비서류 (수정대상)

1. 가입계약시

구분	내용	비고
개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이용계약서 공통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방문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 추가)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1. 만 14 세 미만 ① 가입고객 내방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과 동행 시 인감증명서 제외) ② 법정대리인만 내방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③ 제 3 자 내방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2. 만 20 세 미만 - 가입고객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이용계약서 양식 기재)	가족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가 명시된 건강보험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정)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운전면허증 제외),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 (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2. 변경신청시

구분	내용	비고
단말기 변경	1.개인 : 신분증	이용계약서 공통
주소변경	2.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개명, 개칭	1.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2.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분증 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1.개인 -양수/양도인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시: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2.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일시정지 일시정지해제	1. 개인 ① 방문신청(본인) : 명의자 신분증 ② 방문신청(대리인 신청)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③ 팩스신청(본인):신청서 및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 송부 ④ 팩스신청(대리인 신청):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 송부 2. 법인 및 정부기관 ① 방문신청(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1, 대표자 신분증 ② 방문신청(대리인 신청) :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공문),대리인 신분증 ③ 팩스신청(대표자):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팩스 송부 ④ 팩스신청(대리인 신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팩스 송부	

3. 일반통신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신내역 열람시

구분	내용	비고
일반 통신	1.개인 : 신분증	전화, 팩스,

내역 열람	2.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우편, 전자우편 불가능
이용요금 확인용 통신내역 열람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통신내역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1.개인 : 신분증 2.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분증 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가능
시스템 정상작동 확인용 통신내역 열람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내역 열람 요청시 에는 통신내역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1.개인 : 신분증 팩스 전송 2.법인/국가기관 :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공문) 팩스 전송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가능

※ 시스템의 정상작동 확인용 통신내역 열람의 경우, M2M(기기간의 통신, 사물통신)에 한함

4. 해지 신청시

구분	내용	비고
개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이용계약서 공통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리인방문시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신분증 추가)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1. 만 14 세 미만 ① 가입고객 내방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과 동행 시 인감증명서 제외) ② 법정대리인만 내방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③ 제 3 자 내방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가 명시된 건강보험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

	2. 만 20 세 미만 - 가입고객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이용계약서 양식 기재)	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 정)
외국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